

<琉球國世子>이야기의 流變樣相

김 동 욱*

< 목 차 >

- I. 머리글
- II. 史實記錄의 再檢討
- III. 文獻間의 流變樣相
- IV. 마무리

<Abstract>

A Study on 「Prince of Ryoo-kyoo」 Tales

Kim, Dong-uk

This paper is studied on <Crown Prince of Ryookyoo(琉球)>tales. Those stories were introduced in 1751, recording in 『Taekrijee(擇里志)』; a book of human geography in the Yi-Dynasty. After that, those stories were transmitted to 『Peeseorok(避暑錄)』(1780) written by Jiwon Park(朴趾源) & 『Danryangpaesa(丹良稗史)』(about1800) written by Ryeo Kim(金鑣). Subsequently they were transmitted to the books of unofficial historical stories, as 『Keemoonchonghwa(紀聞叢話)』, 『Kyeseoyadam(溪西野談)』, 『Cheongguchonghwa(靑丘叢話)』, 『Cheongyadamsoo(靑野談藪)』 etc., they appeared from 19C to 20C.

<Crown Prince of Ryookyoo> tales are based on some historical facts ; they were scrappy recorded in 『The Diary of

* 상명대학교 교수

Kwanghaegoon(光海君日記)』 & 『The true record of the Injo Dynasty(仁祖實錄)』. But the accident was getting killed the Crown Prince of next door country, was a sensitive case diplomatically. Therefore, whole affair didn't revealed in historical documents. I attempted reconstruction from scrappy records & some conditions. The result is a murder, it was brought out from local government officials's greed of property.

140 years from the incident, the material of 『Taekrijee』, recorded story form firstly, was added literary embellishment. So the death of Crown Prince of Ryookyoo was described more tragically. 50 years hence from that time, Ryeo Kim appeared, who was an excellent writer of fictional biography. He raised the literary standard of that tale.

Comparatively speaking the actual incident & literary tale, historical records are possible straining intrinsic of the incident. On the other hand, I confirmed historical truths are able to keep accordingly literary equipment in literary works.

I. 머리글

조선조 영조 때 李重煥이 저술한 『擇里志』의 「卜居總論-山水」를 필두로 그 이후의 여러 문헌에 琉球國 世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전하는 바, 이 글에서는 <유구국 세자>이야기라고 일컫기로 한다. 이 이야기의 원천은 『朝鮮王朝實錄』 가운데 『光海君日記』에 전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바탕이 되어 이야기로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택리지』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⑤까지에서 오른쪽의 연도는 해당 문헌이 저술되었거나 간행된 시기를 가리킨다. ⑥ 이후의 자료에서 오른쪽의 話數는 해당 이야기가 수록된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광해군 때의 실화가 바탕이 된 이야기가 대략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李重煥(1690~1752), 『擇里志』: 1751년(영조27)
- ② 張漢喆(1744~?), 『漂海錄』: 1771(영조47)
- ③ 朴趾源(1737~1805), 『避暑錄』: 1780(정조4)
- ④ 金鑣(1766~1821), 『丹良稗史』: 1795(정조19)~1800(정조24)
- ⑤ 鄭東愈(1744~1808), 『晝永編』: 1806(순조6)
- ⑥ ?, 『紀聞叢話』(연세대 4책본)-제261화
- ⑦ ?, 『靑丘叢話』(천리대본, 1896년 필사)-제66화
- ⑧ ?, 『溪西野談』(규장각본)-제43화¹⁾
- ⑨ ?, 『靑野談藪』(가람문고본)-제161화

이 이야기를 역사기록과 관련하여 최초로 논한 것은 朴現圭 교수에 의해서였다.²⁾ 박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사건의 실상을 파헤치거나 후대 서술의 계보에 관한 체계를 세운 전문적인 논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선 후대의 사대부들의 서술에서 사안의 일부가 곡해되거나 단순사건으로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진상을 실상 그대로 밝히고, 후대 사

1) 규장각본 『계서야담』의 편저자를 未詳으로 처리한 것은 『계서야담』을 李羲平(1772~1839)의 저술인 『溪西雜錄』과는 변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규장각본 『계서야담』이 이희평의 『계서잡록』과 편자미상의 『기문총화』를 바탕으로 파생된 문헌으로 보고 있다.

2) 朴現圭, 「광해군조 琉球 세자 사건과 절명시 감상」, 『東方漢文學』20, 東方漢文學會, 2001.

대부들이 언급한 각종 기록의 서술 계보를 파악하겠다'고 서론에서 밝혔다.³⁾

검토 결과, 박 교수는 『광해군일기』의 기록과 『택리지』 등 후대 민간 문헌 사이에 ① 사건 발단의 시기, ② 사건의 내용 등에서 조금 달리 기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⁴⁾ 사건 발단의 시기는 광해군 4년(1612) 경으로 추정되는데, 『택리지』 이후의 민간 문헌에서는 광해군 13년(1621)부터 인조 연간으로 달리 기술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사건의 내용도 『광해군일기』에는 제주도에 표류한 배에 唐·倭·琉球 등 3국인이 함께 탄 상선이라고 했는데, 민간 문헌에는 유구국의 세자가 부왕을 구하기 위해 왜국으로 가던 중 표착한 것으로 달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택리지』에서 비롯된 착오가 그대로 그 이후의 문헌에 답습된 결과로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1609년(광해군1) 왜국으로 압송되었던 유구국왕 尙寧은 1611년(광해군3)에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므로, 1621년(광해군13)은 물론, 박 교수가 사건 발단의 시기로 추정한 1612년(광해군4)에도 그 세자가 부왕의 송환을 위해 왜국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광해군일기』에 언급된 유구 세자는 '문사를 잘하는 25,6세의 유구 사신'이라고 불투명하게 기술해 놓았으며, 이 사건을 언급한 『인조실록』의 기록에도 당시 영의정 이원익이 유구 세자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모호하게 기록된 사실을 들었다. 이에 덧붙여 유구국왕 상녕에게는 친자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제주에 표착한 선박이 상선이고, 그 배에는 유구인을 포함한 唐·倭人이 타고 있었던 사정에 대해 당시 유구국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태와 유구국의 외래인 집단 변화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탁견을 제시했다.

3) 같은 논문, pp.258-9

4) 같은 논문, pp.267-8

필자는 이번 제주도에 표류한 배가 유구·일본·중국을 오가는 상선이 아니고, 유구에서 일본 사츠마번으로 향하는 관선이었을 것이라는 추리를 내릴 수 있다. 이 배에는 유구 사신을 포함한 유구인, 唐人이라고 적은 중국계 유구인, 왜인이라고 적은 사츠마번 관리들이 함께 타고 있었을 것이고, 이 배에 가득 실린 각종 보물은 사츠마번 군사들이 유구에서 빼앗거나 유구 신하가 일본에 억류된 유구 인사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배가 풍랑을 맞아 조선 제주도로 표류하자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은폐하고 상선으로 둔갑했지 않았나 싶다.⁵⁾

박 교수의 이같이 탁월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때의 琉球國人 濟州漂着 사건은 석연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유구국 세자 혹은 왕자에 관한 언급이 몇 군데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⁶⁾ 더욱이 문학적 측면에서 유구국인 표착 사건과 <유구국 세자>이야기를 관련지어 다룬 것이라면, 『택리지』의 기록이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착오에 의해 기록된 것이고, 그 이후의 기록이 그러한 착오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제 값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다. 적지 않은 문헌에 걸쳐 사실과 달리 기록된 것이 있다면, 쉽사리 착오라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까닭을 찬찬히 더듬어 보는 것 또한 긴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박 교수의 소중한 견해를 발판으로 삼아 史實記錄을 다시금 검토해 보고, 미세하나마 『택리지』 이후의 여러 문헌에 달리 나타난 流變樣相을 살펴서 가능한 한 그 의미까지도 풀어보고자 한다.

II. 史實記錄의 再檢討

5) 같은 논문, p.271

6) 국사편찬위원회, 『仁祖實錄』 권1. 元年癸亥四月癸酉. 琉球國世子 漂到我境 使邊臣晉殺 其一., 같은 책, 권8. 三年乙丑正月丁巳. 一日 琉球國王子 滿載寶貝到泊州境.

여기서는 광해군 즉위 초부터 인조 즉위 초까지에 걸쳐 유구인의 제주 표착과 관련이 있는 실록의 기록을 모두 제시해놓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사건의 전말을 가능한 한 재구해 보고자 한다.

㉠ 제주의 前任牧使 李箕賓과 전임 判官 文希賢은 지난해 왜인을 잡은 일을 가지고 공로를 논하는 장계를 올렸으므로 이미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람들의 시비가 자자하게 일어나면서 모두들 南京 사람들이 安南의 商人들과 함께 표류해 왔다고 합니다.

배를 꾸민 규모를 보면 아주 굉장했는데, 배 한 척에 10여 개의 돛을 전례에 따라 세운 것을 보면 분명 왜구의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빈과 희현 등도 처음에는 예의로 우대하면서 여러 날 접대했는데, 막상 배에 가득 실은 보물을 보게 되자 도리어 재물을 탐내는 마음이 생겨나 그들을 피여내다가 모조리 죽여버린 뒤 재물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여 명의 무고한 인명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배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왜구를 잡은 것으로 말을 꾸며 군공을 열거해서는 조정에 속여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事大交隣의 뜻을 생각지 않고 공로를 탐하고 재물을 좋아하여 제멋대로 속이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차의 화근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빼겨 보낸 문서는 이미 정본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을뿐더러 “우리에게 특산물이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귀국에게 증정한다.” 등의 말을 보면, 안남인들이 일본에 오가고 있다는 것인즉, 그것이 이미 근거가 되는 단서인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이기빈과 문희현 등을 한꺼번에 잡아다가 엄하게 심문하고 법에 따라 유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⁷⁾

7) 국사편찬위원회, 『光海君日記』 권50. 四年壬子二月. 濟州前牧使李箕賓 前判官文希賢 以上年捕倭之事 論功狀啓 已爲行賞 厥後人言藉藉 皆以爲南京之人與安南商賈等 合載貨貝 漂海而來 其船隻制度 極爲高大 船之內例植十餘帆 明非倭寇之船 而箕賓希賢等 初以享禮遇之 接待累日 及見滿船之寶 反生利財之心 誘致盡殲 沒取其貨 使無故爲百人命 駢首就死 欲掩蹤迹 且焚其船 終乃成言捕倭 列錄軍功 瞞報朝廷 其不念國家事大交隣之義 貪功黷貨 恣意欺罔 一至於此

㉔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죄수 이기빈이 옥중에서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아무리 중국인이라고 말하더라도 이미 왜적과 한 배를 타고 장사를 한 이상 그들을 난민이라고 하는 데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을 듯합니다. 이를 가지고 중국인을 살해했다고 논하는 것은 실정에 지나침이 없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어떻게 처결하시겠습니까?” <…> (이에 기빈을 북청으로, 판관 문희현을 북도로 귀양보냈다. 기빈은 무관으로서 제주목사가 되었는데 잘 다스린다고 이름이 났다. 판관 문희현이 상인들의 배가 표류해온 것을 발견했다. 당·왜·유구 등 세 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재물을 싣고 있었다. 희현은 그 재물에 탐이 나서 간사하게 속이는 말로 기빈을 충동질하여 그 배를 습격하여 배에 탄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나누어 가졌다. 기빈은 적지 않은 재물을 사졸들에게 나누어주었고, 희현은 가진 것이 더 많았는데도 모두 독차지했다. 황색 명주실이 150섬에 이르렀고, 명주와 마노 등속이 천여 개나 되었다. <…> 상선에는 유구국 사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스물 대여섯 살 가량 되었다. 자못 글재주가 있어서 기빈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사연이 매우 비통했다. 중국 상인 수십 명이 희현에게 밀고하여 왜구를 죽이고 중국인은 살려달라고 했으나 희현은 대답이 없이 모조리 죽여 입을 봉해 버렸다.8)

㉕ 홍문관 부제학 정조, 직제학 이익엽, 수찬 이모, 부수찬 최호가 차자를 올렸는데 그 요지는 이러하다. “<…> 원수를 갚으려는 유구국의 군사

將來之禍 有不可測 況其贍送文書 既非正本 不可取信 而以我有方物 遣人贈來 貴國等語觀之 安南人通往日本 則已有可據之端 請李箕賓文希賢等 竝命拿來 嚴鞫按律定配.

- 8) 같은 책, 권62. 五年癸丑正月. 禁府啓曰 囚人李箕賓 獄中上疏自明 雖曰中國人 既與倭賊同船商販 則其爲亂民 似無可疑 以此論爲殺中國人 則不無過情 上裁何如 <…> 於是竄箕賓於北青 判官文希賢於北道 箕賓以武官牧濟州 以善治名 判官文希賢遇見商人漂船 唐倭琉球三國人 竝載藏貨鉅萬 希賢利其用以詭言動箕賓 襲滅其船而分其貨 箕賓頗分與士卒 希賢所取尤多 皆自專 黃繭絲至百五十石 明珠瑪瑙之屬 以千百計 <…> 商船中有琉球使臣年二十五六 頗工文辭 移書於箕賓 辭甚悲苦 唐商數十人 亦密報于希賢 殺倭口全唐人 希賢不答 竝殲之以滅口.

들이 섬에 와서 숨어 있다는 말도 백성들은 다 허균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 역적 허균, 하인준, 현응민, 우경방, 김윤황을 서쪽 저자거리에서 사형에 처했는데, <…> (원수를 갚으려는 유구국의 군사들이 바다섬에 와서 숨어 있다고 말한 것도 다 균이 했다고 했다. 전후하여 흉악한 모략을 꾸민 데 대하여 윤황과 인준은 하나하나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그러나 균은 아직 자복도 하지 않았으며, 판결문건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붓을 던지고 서명하지 않는 것을 곁에 있던 관리들이 강제로 꺾박하여 서명하게 했다.) <…> 대사헌 남근, 대사간 윤인이 아뢰었다. “<…> 더구나 역적 균은 판결문건을 작성할 때 스스로 말하기를, ‘신이 하지 않은 일도 신의 죄로 만들었으니 지극히 원통합니다. 백령도에 유구국의 군사가 와서 숨어 있다는 말이 어찌 신이 한 말이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이어 제 손으로 서명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도 유구국의 군사에 대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원통하다고 말했을 뿐이니 그 밖의 죄목에 대해서는 그가 실로 자복한 것인데 <…>9)

㉔ 을사일 <…> 비변사에 전교하기를, “<…> 심지어 유구가 제주를 침범하여 원수를 갚고자 한다는 소문은 극히 흉하여 어찌하면 답변을 잘할 것인지 모르겠노라. 서쪽의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남방의 근심 또한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랴. 수군이 방비하는 등의 일을 아울러 신속히 조치하라.10)

㉕ 대비가 승정원에 지시를 내려 중국에 보고하는 글에다 다음 몇 가지

9) 같은 책, 권131. 十年戊午八月. 弘文館副提學鄭造 直提學李益燁 修撰李慕 副修撰崔濯上筭 略曰 <…> 琉球復讐之兵 來藏海島之說 國人皆曰筠之所爲 <…> 逆賊許鈞河仁浚玄應旻禹慶邦金胤黃 正刑于西市 <…> (琉球復讐之兵 來藏海島之說 皆筠爲之 前後凶謀 胤黃仁浚 箇箇承服罪 筠以未承服 不可爲結案 擲筆不押 左右迫令着之) <…> 大司憲南瑾 大司諫尹訥 啓曰 <…> 況筠結案之際 自稱臣所不爲之事 亦爲吾罪 極爲冤悶 白翎琉球之說 豈臣所言乎 因手自着名 渠亦只以琉球兵一款稱冤 則其餘罪目 渠實自服 <…>.

10) 같은 책, 권177. 十四年壬戌五月乙巳. <…> 傳于備邊司曰 <…> 至於琉球 欲犯濟州報仇之說極凶 未知何以善答乎 西邊雖急 南虞亦豈暫忘 舟師防備等事 竝速措置.

말을 첨가하도록 했다. <…> 그 하나는 유구국 세자가 우리 땅에 표류하여 왔을 때 변방의 신하로 하여금 몰래 죽이도록 한 일이다. <…> (이원익이) 그 길로 함문 밖에 나아가 아뢰었다. “<…> 유구국의 일은 그가 세자인지 아닌지를 여기서는 알기 어렵고, 또 이번의 일에는 작든 크든 관계가 없는 만큼 거론하는 것이 부당할 듯하옵니다.”¹¹⁾

㉠ 정사일. 함경북도 절도사 이기빈이 죽었다. 기빈은 탐욕스럽고 暴虐한 무관이었다. 지난 광해군 때에 궁중에 뇌물을 바치고 제주목사 벼슬에 임명되었으며, 부임한 뒤로는 오로지 자신의 잇속을 채우는 데만 힘썼다.

어느 날, 유구국 왕자가 보물을 가득 싣고 고을 경계에 와 닿았는데, 대개 풍랑에 표류되어 이른 것이었다.

기빈이 관관 문희현과 더불어 그들을 포위하여 모조리 죽인 다음 재물을 몰수했다. 왕자는 깃발과 符節을 펼쳐놓고 얼굴빛도 변치 않은 채 조용히 살해되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가엾게 여겼다.

일이 발각되어 기빈은 옥에 갇혔으나 많은 보물과 주옥을 광해군에게 바친 까닭에 형벌을 면할 수 있었다. 반정이 일어난 뒤로도 여전히 북방의 중임을 맡겼으니, 오늘날의 인재 등용이 구차하다고 이를 만하다.¹²⁾

『광해군일기』와 『인조실록』의 상기 기록을 서로 대조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광해군일기』의 기록인 ㉠, ㉡과 『인조실록』의 기록인 ㉢, ㉣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달리 서술되어 있다. 즉,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는 인상이 짙은 것이다.

11) 국사편찬위원회, 『仁祖實錄』, 권1. 元年癸亥四月. 慈殿下教于政院 令於奏文中 添入數款語 <…> 其一 琉球國世子 漂到我境 使邊臣潛殺 <…> 仍詣閣門外啓曰 <…> 琉球事 其爲世子與否 自此難知 且無輕重於此事 似不當學論.

12) 같은 책, 권8. 三年乙丑正月丁巳. 咸鏡北道節度使李箕賓死 箕賓貪虐武夫也 向在光海朝 納賂宮掖 圖授濟州牧使 赴任之後 專務肥己 一日 琉球國王子 滿載寶貝 到泊州境 盖漂風而至也 箕賓與判官文希賢 圍而盡殲之 沒入其貨 王子陳其旌節 不變顏色 從容遇害 聞者憐之 事覺箕賓就獄 多獻寶珠于光海故 得免刑章 逮至反正之後 尙畀北門重任 今日用人 可謂苟矣.

㉠은 제주목사였던 이기빈과 판관이었던 문희현이 1611년(광해군3) 제주에 표착한 배를 발견하고 그들을 왜구라고 하여 몰살시킨 뒤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으로 군공을 내세워 조정에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듬해의 기록인 ㉡을 보면, 그 배에는 왜인만이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인과 유구인이 함께 타고 있던 배였음이 밝혀진다.

㉢의 기록에도 또한 이기빈과 문희현이 등장하고, 그들이 표류해 온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 배에 싣고 온 재물을 몰수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점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유구국 왕자가 인솔해 가던 중이었다는 것이다. ㉣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 ㉡의 기록과 ㉢, ㉣의 기록은 분명 별개의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을 두고 어째서 『광해군일기』의 기록과 『인조실록』의 기록이 이처럼 달리 나타나게 되었을까? 신숙주의 『海東諸國記』에 따르면, 조선과 유구는 5,430리나 떨어져 있어서, 조선시대의 항해기술로는 편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한다.¹³⁾ 이처럼 양국간의 거리는 멀었으나 양국간의 被虜人과 漂流人에 대한 송환은 조선 태조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⁴⁾ 그러므로 표류해온 유구국 왕자를 자의로 살해한 사건은 양국간에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한 광해군 조정에서는 이 일을 쉬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희현이 표류인 일행을 몰살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광해군 시대는 중국 대륙에 後금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때이면서 明의 통제력이 약화 일로에 있던 시기였다. 조선과 유구의 외교관계는 피로인과 표류인의 상호 송환 문제까지도 대체로 명나라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직접적인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후금이 세운 淸 왕조가 들

13) 河宇鳳 外, 『朝鮮과 琉球』, 도서출판 아르케, 2000, p.189

14) 같은 책, pp.192-212 참조.

어선 이후에는 無私交之禮를 표방함으로써 청나라를 매개로 하지 않은 교린국간의 개별적인 교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유구국 세자 피살 사건은 표면화되지 못하고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리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09년(광해군1) 4월초, 유구국은 왜국의 사즈마(薩摩)를 지배하던 시마즈(島津)씨의 침략으로, 당시 국왕인 尙寧 이하 100여 명이 포로가 되어 사즈마로 압송되었다.¹⁵⁾ 이듬해 시마즈씨는 유구국왕을 대동하여 에도(江戸)막부의 제2대 장군인 도쿠카와 히데타다(德川秀忠)를 알현했는데, 막부에서는 유구를 시마즈씨의 영토로 허용하면서 표면상 유구국이 독립 왕조인 것처럼 하도록 했다. 다시 이듬해인 1611년(광해군3) 9월 시마즈씨는 포로로 억류했던 유구국왕과 그 신하들을 귀국시키는데, 미처 이 사실을 접하지 못한 유구국의 세자가 부왕을 구하기 위해 官船에 폐백으로 쓸 많은 물화를 싣고, 유구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사즈마에서 파견되어 있던 왜인과 함께 사즈마가 있는 南九州로 향하던 도중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하게 된다.¹⁶⁾

이들은 처음에 상인으로 가장하고 제주목사와 판관에게 표류인으로서 대접을 받았으나, 배에 실려 있는 많은 물화에 생각이 바뀐 목사와 판관에 의해 생명에 위협을 받자 사실대로 신분을 밝히고 선처를 부탁했으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판관에 의해 몰살을 당하고 만다.¹⁷⁾ 뒤늦어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엄청난 것임을 깨달은 제주목사와 판관은 급기야 사실

15) 하우봉 외, 앞의 책, pp.83-84

16) 박현규, 앞의 논문, pp.269-270 참조. 박 교수는 제주 표착 사건이 벌어진 해를 1612년(광해군4)으로 추정하였으나, ㉠의 기록이 광해군 4년조의 것이고, 그 전해에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표착 사건은 1611년에 일어났고, 태풍이 오는 시기인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17) 박 교수는, 왜국에 붙잡혀 갔던 유구국왕 尙寧에게는 친자가 없어서 尙永의 동생이자 尙久의 넷째 아들인 尙豊이 상영의 뒤를 이었다고 하였다.(같은 논문, p.272) 그러나 상영에게 본디 친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주에 표착하여 피살되었기 때문에 상풍이 그 뒤를 이었던 것이다.

을 은폐하고 침입해온 왜구를 소탕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조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¹⁸⁾ 조정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사대교린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공로를 탐하고 재물을 좋아하여 제멋대로 조정을 속인 죄’를 들어 제주목사와 관관의 처벌을 주장했다.

한 해가 지난 1613년(광해군5) 정월, 의금부의 문초 과정에서 목숨을 비는 중국인조차도 왜구로 몰아 죽인 일에 대해 추궁하자, 전 제주목사 이기빈은 옥중 상소문을 올려, 자신들이 죽인 자들이 모두 왜구가 아니라 중국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구와 함께 장사를 한 이상 亂民으로 처결한 자신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것을 발명했으나, 조정에서는 두 사람을 모두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기빈은 상소문에서 유구국에 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표류한 상선에 실려 있는 재물에 탐이 난 지방 관리들이 벌인 사건으로 축소·은폐한 내용을 史草에 夾註로 덧붙였다. 처리가 곤란했던 유구국 세자에 관한 일은 ‘자못 글재주가 있는 20대 중반의 유구국 사신’으로 개변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조정에서는 유구국 세자의 피살과 관련된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듯하다. 1618년(광해군10)에는 金直哉의 誣獄(1612)·癸丑獄事(1613) 등으로 小北派를 제거하고 당시 조정을 장악한 大北派 내부에 반목이 생겨 許筠의 동아리가 역모죄에 얽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허균 일파가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허균 일파를 모함하기 위해 반대파가 꾸민 일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의 기사에 나와 있듯이, 유구국 군사들이 피살된 세자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령도에 들어와 잠복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러한 소문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622년(광해군14)까지도 나돌아, ㉡의 기사에 보이듯이 광해군이 직접 비변사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전교를 내리기까지 했다.

드디어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경운궁에 유폐되었던 인목대비는

18) ㉠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당시에 떠돌던 소문에는 표류해온 사람들이 남경에서 온 중국인과 안남의 상인으로 알려졌다. 장한철의 『표해록』이나 정동유의 『주영편』에서 언급한 ‘옛날 탐라왕이 안남 세자를 죽인 데 대해 안남인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한 풍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승정원에 지시를 내려 중국에 보내는 奏文에 광해군의 비행에 대하여 조목조목 써넣으라고 하는 바, 그 가운데 하나가 ‘유구국 세자가 우리 땅에 표류하여 왔을 때 변방의 신하로 하여금 몰래 죽이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광해군에 대한 인목대비의 원한 때문에 ‘사주’한 것으로 굴절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자 새삼스럽게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한 이원익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문제의 거론을 사전에 진화했다. 하나는 당시 피살된 자가 유구국의 세자인지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다른 이유는 그 일이 광해군의 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은 끝내 매몰되지 않고 14년만인 1625년(인조), 사건의 주범이었던 이기빈이 죽자 사판에 의해 ㉔)에서와 같이 다시금 거론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㉕)의 일부 내용과 ㉔)의 일부 내용이 결합되어 사건 발생으로부터 140년이 지난 1751년(영조27) 『택리지』에 재등장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Ⅲ. 文獻間의 流變樣相

이제 1611년(광해군3) 유구국 세자의 피살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러 문헌에 수록된 이 이야기가 流變¹⁹⁾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실제 사건과 각 문헌에 수록된 이야기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서사단락별로 ㉖)에는 실제 사건을, ㉗)에는 『擇里志』의 내용을, ㉘)에는 『避暑錄』의 내용을, ㉙)에는 『丹良稗史』에 수록된 <琉球國王世子外傳>의 내용을, ㉚)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는 『紀聞叢話』·『溪西野談』·『靑邱叢話』·『靑野談藪』의 내용을 제시했다.²⁰⁾

1. 琉球國王之 被拉

㉖) 1609년(광해군1) 4월초 시마즈씨가 유구국을 침략, 5월말 유구국왕

19) 이 글에서 ‘流變’의 의미는 ‘通時的인 변화’를 뜻한다.

20) 이들을 이하에서는 ‘『기문총화』류’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하 100여 명의 포로를 사츠마로 압송함.²¹⁾

㉠ 인조 때 왜구가 유구국을 침공하여 왕을 포로로 붙잡아 감.²²⁾

㉡ 세상에 전하기를, 皇明天啓年間に 왜구가 유구국을 침공하여 왕을 포로로 붙잡아 감.²³⁾

㉢ 인조 때 왜구가 유구국을 침공하여 왕을 붙잡아 돌아감.²⁴⁾

㉣ 인조 때 왜구가 琉璃國을 침공하여 왕을 포로로 붙잡아 감.²⁵⁾

㉠에서 ㉣까지의 자료에는 모두 왜인이 유구국을 침공하여 그 왕을 포로로 붙잡아 갔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의 시마즈(島津)씨는 큐우슈우(九州)의 사츠마(薩摩)를 다스리던 자였으니 왜인이 분명하다. 다만, ㉣에만 유구국이 유리국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轉寫과정에서의 오기로 생각된다. 『기문총화』류에는 모두 ‘유리국’으로 전사되어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왜인의 유구국 침공과 유구국왕의 피랍 시기가 실제와는 달리 어째서 『택리지』 이후의 문헌에는 인조 때 혹은 천계연간으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다. ‘천계’는 명나라 제16대 熹宗의 연호로 1621년(광해군13)부터 1627년(인조5)에 해당한다. 박지원은 『택리지』를 읽었던 듯한데,²⁶⁾ ‘인조 때’라고 하지 않고 ‘천계연간’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았던 듯하나 역시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나머지 기록에 ‘인조’ 시대의 일로 기록된 것은 실록의 기록에 이 사건이 표면화 된 것이 『광해군일기』에서가 아니라 『인조실

21) 하우봉 외, 앞의 책, pp.83-84

22) 李重煥, 「卜居總論 山水」, 『擇里志』. 仁祖朝 倭攻琉球 虜王去.

23) 朴趾源, <避暑錄序>, 『熱河日記』, 『燕巖集』 권14. 世傳 皇明天啓中 倭攻琉球 虜其王.

24) 金鑣, <琉球國王世子外傳>, 『丹良稗史』, 『灌庭遺藁』 권9. 仁祖時 倭人侵琉球 執其王以歸.

25) 『紀聞叢話』 권2. 제261화. 仁祖朝 倭攻琉璃國 虜其王而去.

26)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此載李重煥擇里志.

록'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광해군일기』에는 唐人, 琉球人, 倭人이 함께 타고 있던 상선으로만 나타나 있던 것이 『인조실록』 3년(1625)조 기록에 와서야 유구국 세자 피살 사건으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2. 琉球國世子の 濟州漂着

㉗ 1611년(광해군3) 어느 날, 유구국 왕자가 제주 경내에 이르러 정박함.²⁷⁾

㉘ 유구국 세자가 국보를 싣고 가서 부왕을 구하려고 했는데, 배가 표류하여 제주에 이름.²⁸⁾

㉙ 유구국의 태자가 그 나라에 대대로 전해오는 보물을 싣고 가서 부왕을 구하려고 했는데, 배가 표류하여 제주에 이름.²⁹⁾

㉚ 유구국의 왕세자가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왜에 들어가 부왕을 구하려다가 배가 표류하여 제주의 洋曲에 정박함.³⁰⁾

㉛ 유구국 세자가 국보를 싣고 가서 부왕을 구하려고 했는데, 배가 표류하여 제주에 이름.³¹⁾

실록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그 나머지 기록에는 유구국의 왕자가 억류 중인 부왕을 구하기 위해 왜국으로 가다가 제주에 표류해온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다만, 김려의 <유구국왕세자외전>에서는 제주의 ‘양곡’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했다. 표류인을 인솔하고 온 자의 신분이 실록에는 왕자로, 박지원의 기록에는 태자로, 여타 기록에는 세자로 달리 표기되어 있으나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해볼 때 ‘세자’라는

27) 국사편찬위원회, 『仁祖實錄』 권8, 三年乙丑正月. 一日 琉球國王子 <…> 到 泊州境.

28) 이증환, 앞의 책, 같은 곳. 其世子載其國寶 欲贖父 舟漂到濟州.

29)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琉球太子 載其國中世寶 將以贖父 舟漂到濟州.

30) 김려, 앞의 책, 같은 곳. 王世子齋珍寶入倭 將贖父王 舟漂來泊于濟州洋曲中.

31) 『기문총화』 권2. 其世子 載國寶 欲贖其父 漂到濟州.

지칭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왕을 구하기 위한 폐백으로 준비한 물품도 ㉠와 ㉡에서는 國寶로, ㉢에서는 國中世寶로, ㉣에서는 珍寶로 달리 표기되어 있으나, 다음 단락의 설명을 보면 대략 酒泉石과 漫山帳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단락의 설명을 보면, ㉤에는 寶貝라고만 되어 있다. 박지원은 피서산장에서 요술을 구경하는 가운데 실제로 술을 만들어 내는 酒石을 목도하였다고 하면서,³²⁾ 복건성 사람인 왕삼빈이 말한 것처럼, 바다 거미가 호랑이를 그물로 엮는다는 것이 정말이라면, 만산장도 이치로 보아 괴이할 것은 없다고 했다.³³⁾ 당시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다면, 이를 소재로 유구국 세자의 보물이야기가 사실에서 허구로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배에 신고 온 財物

㉤ 유구국의 배에는 보패가 가득 실려 있었음.³⁴⁾

㉠ 제주목사가 배에 신고 온 보물에 관해 묻자, 세자는 酒泉石과 漫山帳이라고 대답함.³⁵⁾

㉡ 제주목사가 배에 신고 온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태자는 주천석과 만산장이라고 대답함.³⁶⁾

㉢ 제주목사 이란이 사람을 보내 배 안을 정탐해보니 만산장 2개, 주천석 1개, 흰 앵무 1쌍, 水晶卵 2개가 있었음.³⁷⁾

㉣ 제주목사가 나타나 배에 신고 온 보물에 관해 묻자, 세자는 酒泉石과 漫山帳이라고 대답함.³⁸⁾

32)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以昨所見幻戲酒石觀之 則琉球酒石亦似幻術.

33) 같은 곳. 以閩人王三賓所言 海蛛網虎爲眞 則漫山帳理或無怪.

3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같은 곳. 滿載寶貝.

35) 이중환, 앞의 책, 같은 곳. 牧使某問舟中寶 世子答以有酒泉石漫山帳.

36)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牧使某問 舟中有何物 太子以酒泉石漫山帳對.

37) 김려, 앞의 책, 같은 곳. 濟州牧使李灤 送人偵舟中 寶有漫山帳二浮 酒泉石一座白鸚鵡一雙 水晶卵二枚.

전향에서 언급하였듯이, 실제로는 보패였던 유구국의 폐백이 후대의 이야기 자료에는 대체로 주천석과 만산장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천석은 네모난 한 덩이의 돌로 가운데가 움푹한데, 그곳에 맑은 물을 담아두면 금새 맛 좋은 술로 변한다고 했다. 만산장은 거미줄에 약을 물들이며 짜서 만든 것으로, 작게 펼치면 집 한 칸을 덮을 만하고, 크게 펼치면 산도 덮을 수 있는 것이면서 어떤 것도 투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택리지』· 『피서록』· 『기문총화』류의 기록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피서록』에서는 주천석이 마노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고, 만산장은 바다거미줄로 짠 것으로, 그 촘촘함에 대해 ‘비도 새지 않는다’ 라는 말 대신 ‘작은 것으로는 모기나 파리도 들어갈 수 없고, 큰 것으로는 뱀도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했다.³⁹⁾

이들과는 달리 <유구왕세자외전>에는 주천석과 만산장 외에도 왼쪽 발가락으로 비과를 탈 줄 아는 흰 앵무새 한 쌍, 밤에 해처럼 빛을 발하는 거위알 모양의 수정 두 개가 더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만산장은 거미줄에 옷칠을 해서 만든 것으로 소개했고, 주천석은 너비가 한 자, 길이가 한 자 두 치, 높이가 너 자 가량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들만이 유구국 왕세자가 가져온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나머지도 매우 신비스러운 것들이어서 알 수가 없

38) 『기문총화』 권2. 牧使某出見 問舟中寶 世子答以酒泉石漫山帳.

39) 이중환, 앞의 책, 같은 곳. 酒泉石者 方石一塊 中央凹 每以清水貯 則變爲美酒 帳則以蜘蛛絲 染藥織成 小張則可覆一間 大張則雖大山可覆 而雨亦不漏 眞絕寶也.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酒泉石 形如瑪瑙 中嵌容一盞 以清水貯之 卽變爲美酒 漫山帳 以海蛛絲 染藥結造 小張則可覆一屋 大張則可覆一山 小而蚊蠅 大而蛇虺 莫能入.

『기문총화』 권2. 石者方石一塊 中央凹 以清水貯之 卽變爲美酒 帳者以蜘蛛絲 染藥織成 小帳則不覆一間 大帳則雖太山可覆 而雨不漏 眞絕寶也.

었다.”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제주목사의 실명이 李箕賓이었는데, 『택리지』, 『피서록』, 『기문총화』류에는 ‘목사 아무개(牧使某)’로 하나같이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유구왕세자외전>에는 李灑이라는 가공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에 근거를 둔 逸話가 說話화 과정을 거쳐 小說로 근접해 가는 주요한 징표의 하나라고 하겠다.

4. 財物奪取와 世子 殺害

㉠ 제주목사 이기빈과 판관 문희현이 유구국 사람들을 포위하여 모조리 죽이고, 배에 실려 있던 재물을 몰수함. 왕자는 깃발과 부절을 펼쳐놓고, 안색도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죽음을 당함.⁴¹⁾

㉡ 목사가 달라고 하니 세자는 불허함. 목사가 군사를 보내 포위하여 세자가 체포되자 즉시 주천석을 바다에 던져버림. 목사는 배 안의 재물을 모조리 몰수하고, 세자를 杖殺시킴.⁴²⁾

㉢ 목사가 달라고 하니 태자가 불허함. 마침내 목사가 군사를 보내 배를 포위하자, 태자는 주천석과 만산장을 바다에 던져버림. 목사는 배 안의 재물을 모조리 몰수하고, 드디어 태자를 살해함.⁴³⁾

㉣ 이관은 탐이 나서 사람을 보내 “나에게 주천석을 주면 너희가 왜국에 들어가도록 보내주마.” 라고 알리자, 세자는 “내가 보물을 아껴서가 아니오. 지금 부왕이 잡혀가 갇혀 계시는데, 보물이 없으면 부왕을 모셔올

40) 김려, 앞의 책, 같은 곳. 帳以蜘蛛絲 塗柒藥造成 石廣一尺 長一尺有二寸 高四尺餘 貯清水則爲酒 鸚鵡能以左指彈琵琶 卵似鵝卵 夜置室中 光明如日 其餘甚秘 不得識也.

4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같은 곳. 箕賓與判官文希賢 圍而盡殲之 沒入其貨 王子陳其旌節 不變顏色 從容遇害.

42) 이중환, 앞의 책, 같은 곳. 牧使請之 世子不許 牧使遣兵圍捕 世子被收 卽以石投海 牧使盡籍舟中物 因杖殺之.

43)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牧使請之不許 則遂發卒圍舶 太子以石帳投之海中 牧使盡籍舶中所載 遂殺太子.

수가 없소. 우리나라의 치욕은 이웃나라의 치욕이기도 하니, 바라건대 대부께서는 애처롭게 여겨주소.” 라고 함. 세 번이나 사람을 보냈으나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불허함. 그러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귀중한 보물을 가져와 바치겠다고 애걸함. 이란은 수군을 출동시켜 포위했고, 세자가 붙잡히게 되자 그의 종자 한 사람이 주천석을 안고 바닷물에 뛰어들어 죽음. 이란은 배 안의 재물을 모조리 약탈하고, 마침내 세자와 종자 10여 명을 죽임.⁴⁴⁾

㉞ 목사가 달라고 하니 세자는 불허함. 목사가 포위하여 세자는 체포되자마자 즉시 주천석을 바다에 던져버림. 목사는 배 안의 나머지 재물을 모조리 몰수하고, 세자를 杖殺시킴.⁴⁵⁾

제주목사와 유구국 세자 사이의 재물을 두고 일어난 대립이 살인사건으로 확대되는 대목이다. 『인조실록』에는 유구국 왕자가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유구국 왕자의 죽음을 미화하고 비장하게 묘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광해군 조정의 문제를 부각시켜 외교적인 대응능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광해군일기』의 경우, 1624년(인조2) 이괄의 난으로 광해군 당대의 施政記와 承政院日記 등 주요 자료가 소실되어, 일기 형태로 편찬하기로 했으나 후금의 침입으로 중지되는 등 지체되다가 10년 11개월만에 中草本과 正草本이 완성되었으나 끝내 印刊되지 못했다.⁴⁶⁾ 따라서 중초본이 그대로 전하는 태백산사고본 『광해군일기』에는 교정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바, 서인 정권에 의한 수정을 확인해 볼 수 있

44) 김려, 앞의 책, 같은 곳. 灤意欲之 遣使報曰 與我酒泉石 當送爾入倭地 世子辭曰 吾非愛寶也 今父王頽然在拘幽中 無寶無以贖父王 吾國之恥 猶隣國之恥也 願大夫哀之 使三往 世子涕泣不許 且乞歸國 以重寶浮海來餽 灤發舟師圍之 世子被擒 有一從者 抱石投水死 灤因盡掠舟中諸物 遂殺世子 從死者十餘人.

45) 『기문총화』 권2. 牧使請之 世子不許 牧使圍捕 其世子被收 卽以石投海 牧使盡籍舟中餘寶 仍杖殺之.

46)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1999, pp.95-101

다.

이에 비해 『인조실록』은 전체적으로 서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히 광해군 관련 기록은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주목사와 판관이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왕자가 旌節을 펼쳐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뜻이다. 이웃나라의 왕자임을 확인하고서도 살인을 자행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서인정권에서 광해군을 바라본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세자가 체포되었을 때, ㉠의 자료에서는 주천석을 세자가 바다에 빠뜨리거나 또는 그를 따라온 종자가 안고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설정했다. ㉡에는 태자가 주천석과 만산장을 모두 바다에 던진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의 자료에는 쌍방간의 타협과정이 생략된 채 보물의 요구와 그에 대한 거절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그러나 ㉣에는 쌍방간의 타협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는 ㉠에 비해 한 걸음 더 소설에 근접해 있다고 하겠다.

5. 世子の 絶命詩

㉠ 25,6세 가량 된 유구국의 사신이 문사에 능숙했음. 그가 이기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문장이 매우 비장했음.⁴⁷⁾

㉡ 죽을 무렵, 세자는 붓과 종이를 달라고 하여 읊시 한 편을 씀.⁴⁸⁾

㉢ 죽을 무렵, 태자는 시를 읊조림.⁴⁹⁾

47) 국사편찬위원회, 『광해군일기』 권62. 五年癸丑正月. 有琉球使臣年二十六頗工文辭 移書於箕賓 辭甚悲苦.

48) 이중환, 앞의 책, 같은 곳. 世子臨死請紙筆 書一律曰 堯語難明桀服身 臨刑何暇訴蒼旻 三良臨穴人誰贖 二子乘舟賊不仁 骨暴沙場纏有草 魂歸故國弔無親 竹西樓下滔滔水 遺恨分明咽萬春.

49)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太子臨死 咏詩曰 堯語難分桀服身 臨刑何暇訴蒼旻 三良臨穴誰能贖 二子乘舟賊不仁 骨暴沙場纏有草 魂歸古國弔無親 竹西樓下

- ㉔ 죽을 무렵, 세자는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시를 씀.50)
- ㉕ 죽을 무렵, 세자는 붓과 벼루를 달라고 하여 읊시 한 편을 씀.51)

앞에서 밝혔듯이, ㉔의 ‘유구국 사신’은 외교적 마찰을 의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주목사에게 매우 비장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㉕ 이하의 자료에는 몇몇 글자의 異同은 있으나 절명시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비장한 내용이라고는 했으나 구체적인 서한문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비해 ‘모래사장에 나뒹구는 해골’, ‘고국에 돌아가도 가없이 여길 사람이 없는 닻’,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만년이 지나도 목메는 한’ 등의 비통한 시구가 담긴 시를 지었다고 함으로써 소설적 형상화가 한층 잘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6. 虛偽報告와 問責

㉔ 이기빈 등은 표류해온 자들이 왜구라고 조정에 보고하여 표창을 받았으나 이듬해(1612년, 광해군4) 2월 허위보고였음이 드러나 체포됨. 1613년(광해군5) 1월 28일, 이기빈은 북청으로, 문희원은 북도로 귀양 보냄.52)

㉕ 세자가 죽자, 목사는 국경을 침범한 도적이라고 속여 조정에 보고함.

滔滔水 遺恨分明咽萬春.

50) 김려, 앞의 책, 같은 곳. 世子臨死 咋血書詩曰 堯語難孚桀服身 臨刑何暇訴蒼旻 三良入穴人誰贖 二子乘舟賊不仁 骨暴沙場纏有草 魂歸故國弔無親 竹西樓下滔滔水 遺恨分明咽萬春.

51) 『기문총화』 권2. 臨死請筆硯 書一律曰 堯語難明桀服身 臨刑何暇訴蒼旻 三良入穴人誰贖 二子乘舟賊不仁 骨暴沙場纏有草 魂歸故國弔無親 竹西樓下滔滔水 遺恨分明咽萬春.

52) 국사편찬위원회, 『광해군일기』권50. 四年壬子二月. 濟州前牧使李箕賓 前判官文希賢 以上年捕倭之事 論功狀啓 已爲行賞 <…> 其船隻制度 <…> 明非倭寇之船 而箕賓希賢等 初以享禮遇之 接待累日 及見滿船之寶 反生利財之心 誘致盡殲 沒取其貨 <…> 終乃成言捕倭 列錄軍功 瞞報朝廷, 같은 책, 권62. 五年癸丑正月. 於是竄箕賓於北靑 判官文希賢於北道.

뒤에 그 일이 탄로되어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⁵³⁾

㉔ 목사는 대간의 탄핵을 받고 사형에서 한 등을 감하여 멀리 유배를 갔다고 한다.⁵⁴⁾

㉕ 세자가 죽자, 이란은 국경을 침범한 도적이라고 속여 조정에 보고함. 뒤에 그 일이 탄로되자, 이란은 연좌되어 거의 죽을 뻔함.⁵⁵⁾

㉖ 세자가 죽자, 목사는 국경을 침범한 도적이라고 속여 조정에 보고함. 뒤에 그 일이 탄로되어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면함.⁵⁶⁾

후일담으로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을 밝히는 대목이다. ㉔를 제외한 자료들이 모두 범죄를 교활하게 군공으로 속여 허위보고를 하였다가 발각된 것으로 처리했고, 이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㉕에서는 ‘대간의 탄핵’이라고만 함으로써 탄핵의 원인이 허위보고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7. 評結

㉗ 1625년(인조3) 1월 8일의 이기빈 卒記에 “일이 발각되어 기빈은 옥에 갇혔으나 많은 보물과 진주를 광해군에게 바쳤기 때문에 형벌을 면할 수 있었다. 반정이 일어난 뒤에도 기빈에게 여전히 북변의 중책을 맡기는 데 까지 이르렀으니, 오늘날 인재등용이 구차하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史論을 붙였음.⁵⁷⁾

㉘ 없음.

㉙ 목사의 죄는 비록 저잣거리에서 목을 베어도 갇기가 어려운데, 그의

53) 이증환, 앞의 책, 같은 곳. 既殺之 又誣以犯境之賊 啓聞于朝 後事露 幾死僅生.

54)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牧使遭臺參滅死長流云.

55) 김려, 앞의 책, 같은 곳. 灤既殺世子 誣以犯境賊 啓于朝 後事露 灤坐幾死.

56) 『기문총화』 권2. 既殺 誣以犯境賊 啓于朝 後事露 幾死僅免.

57) 국사편찬위원회, 『인조실록』 권8, 三年乙丑正月. 事覺 箕賓就獄 多獻寶珠于光海 故得免刑章 逮至反正之後 尙畀北門重任 今日用人可謂苟矣.

자손들이 어떻게 길이 부귀를 누리는가?58)

㉠ 이란의 죄는 대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음. 재물을 탐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첫째 죄임.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든 것이 둘째 죄임.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속인 것이 셋째 죄임. 신하로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을 범해도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이나 당시 사람들은 그를 단죄하는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아 난폭한 신하로 하여금 앉아서 나라의 녹을 받아먹고 자식들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59)

㉡ 없음.

㉠은 역사기록이므로 사론이 붙는 것이 당연하다. ㉡는 일기 형식이므로 사건의 소개 뒤에 개인적인 느낌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傳 양식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評結部이다. 김려는 이란의 죄목을 세 가지로 지적한 뒤, 인용문의 밑줄 친 대목에서와 같이 비관을 가했다. 광해군 때 李爾瞻의 무고로 죽음을 당한 延興府院君 金梯男의 7대손인 김려60)로서는 당시 집권층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문학작품을 통해서나마 맞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IV. 마무리

이상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구국세자>이야기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 『광해군일기』와 『인조실록』에 단편적인 기록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세자가 피살된 사건이었으므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역사기록에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있지 않다. 단편적인 기록과 몇몇

58) 박지원, 앞의 책, 같은 곳. 牧使之罪 雖肆市難贖 其子孫如何長享富貴.

59) 김려, 앞의 책, 같은 곳. 夫灑之罪 有三焉 貪財殺人一也 壞隣國交二也 欺君誣上三也 人臣有一於此 宜伏祥刑 而當時君子 不能出一言 以討其罪 使暴亂之臣 坐享爵祿 子孫榮貴 寧不悲乎.

60) 김려, <答李益之書>, 앞의 책, 권12 참조.

정황을 바탕으로 이를 재구해 본 결과, 기존의 논의에서와는 달리 지방관리의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빚어진 이웃나라 세자 살해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 사건이 발생하고 140년이 경과한 뒤 처음으로 이야기 형태로 기록된 『택리지』의 자료는 문학적인 윤색이 가해져 세자의 죽음이 한층 비극적으로 그려졌다. 그로부터 50년 가량 후에 뛰어난 이야기 작가인 김려를 만나 이 이야기는 한층 문학적인 수준이 높아졌던 것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출현한 『기문총화』, 『계서야담』, 『청구총화』, 『청야담수』 등의 야담집에도 전승되었는 바, 이들 『기문총화』류의 야담집에는 몇몇 글자의 출입이나 이동이 있을 뿐 『택리지』의 기록을 그대로 전사했다. 『피서록』의 기록 역시 『택리지』의 기록을 받아들이면서 부분적으로 표현을 달리했다. 이에 비해 김려의 <유구왕세자의 전>은 傳 양식을 빌려 인물의 성격 묘사를 한층 섬세하게 해냈고, 사건을 다른 기록에 비해 긴박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셋째, 실제 사건과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이야기 사이의 유변상황을 살펴볼 때, 역사기록에서는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으나, 문학작품에는 역사적 진실이 문학적 장치 속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유구국세자>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야담 · 유구국 왕자 · 제주도 · 표류기 · 조선왕조실록

(Yadam · Prince of Ryoo-kyoo · Je-joo Island · Document of Drift · The True Records of Yi dynasty)

참고문헌

- 金鏞, 『丹良稗史』, 『溱庭遺藁』 권9, 서울, 啓明文化社, 1988.
- 未詳, 『溪西野談』, 東國大 附設 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文獻說話全集』, 서울, 太學社, 1991.
- 未詳, 『紀聞叢話』, 鄭明基 編, 『韓國野談資料集成』6, 서울, 啓明文化社, 1987.
- 未詳, 『靑邱叢話』, 蘇在英·朴湧植 編, 『韓國野談史話集成』1, 서울, 泰東, 1989.
- 未詳, 『靑野談藪』, 鄭明基 編, 『韓國野談資料集成』4, 서울, 啓明文化社, 1987.
- 朴趾源, 『燕巖集』, 朴榮喆 編, 京城, 大同印刷所, 1932.
- 申叔舟, 『海東諸國記』, 서울, 景文社, 1975.
- 實錄廳,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1986.
- 李重煥, 『擇里志』, 李翼成 譯, 서울, 乙酉文化社, 1992.
- 張漢喆, 『漂海錄』, 鄭炳昱 譯, 서울, 汎友社, 1990.
- 鄭東愈, 『晝永編』, 南晚星 譯, 서울, 乙酉文化社, 1974.
- 姜東燁, 「朝鮮時代 東南아시아文學과의 交流研究」, 『淵民學志』8, 淵民學會, 2000.
- 高柄翼,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 출판부, 1970.
- 朴現圭, 「광해군조 琉球세자 사건과 절명시 감상」, 『東方漢文學』20, 東方漢文學會, 2001.
- 孫承喆, 「朝鮮·琉球關係 史料에 대하여」, 『成大史林』12·13, 成均館大史學會, 1997.
- 尹致富, 「장한철의 <漂海錄>과 한문단편의 관련양상」, 『古小說研究』2, 韓國古小說學會, 1996.
- 尹致富, 『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1999.
- 임승표, 「광해군일기의 편찬경위와 국역과정」, 『민족문화』18, 민족문화

추진회, 1995.

鄭炳浩, 「金鑣의 「傳」研究」, 『伏賢漢文學』6, 伏賢漢文學硏究會, 1990.

河宇鳳 外, 『朝鮮과 琉球』, 도서출판 아르케, 2000.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